

오픈소스 소송사례 분석 1: 중국 数字天堂 V. 柚子

오픈소스센터 (2022.07.26.)

1 목적

○ 목적

- 중국의 오픈소스 소송 사례 분석을 통한 오픈소스 지식재산권 대응 방안 마련

○ 참고자료

- 한국저작권위원회, “북경 지식재산권법원 민사 판결문”, <http://www.bjcourt.gov.cn/cpws/paperView.htm?id=100734294859&n=1>, (1심판결 내용)
- Linux중국, “중국 GPL 소송 사례 1: GPL 문제에 대한 논의”, 2020.9.16., <https://zhuanlan.zhihu.com/p/97744548> (2심 내용 중 오픈소스 및 GPL 라이선스)
- | | | |
|---|----|----|
| 중화인민공화국의 | 사법 | 제도 |
| https://ko.wikipedia.org/wiki/%EC%A4%91%ED%99%94%EC%9D%B8%EB%AF%BC%EA%B3%B5%ED%99%94%EA%B5%AD%EC%9D%98.%EC%82%AC%EB%B2%95.%EC%A0%9C%EB%8F%84 | | |
- | | | | |
|---|-----|----|----|
| 중국법의 | 체계와 | 검색 | 방법 |
| https://webcache.googleusercontent.com/search?q=cache:kwWcX9kcM8sJ:https://world.moleg.go.kr/cms/commonDown.do%3FDLD_CFM_NO%3D8YCPB6BVTUIUMDC8FZI4%26FL_SEQ%3D31+&cc=1&hl=ko&ct=dnk&gl=kr | | | |
- KITA Market Report, “중국 지식재산권 정책 동향 및 시사점”, 2019.4.25., <https://mblog.naver.com/china-contents-lab/221522579847>
- 김수민, “중국 사법체계는 우리와 어떻게 다를까?”, 2022.04.11., <https://mlawtimes.co.kr/Content/Opinion?serial=177716>.
- 전우정, “중국 사법체계에 나타나는 지방분권 전통”, 2017.10.30., <https://mlawtimes.co.kr/Content/Article?serial=138955>
- 중기이코노미, “중국서 지재권 소송..증거는 공증받는 게 좋다”, 2021.9.30., <https://www.junggi.co.kr/article/articleView.html?no=27556>

2 중국의 사법 체계 이해

○ 사법 구조

- 최고 인민법원
 - : 최고 항소 재판 담당
- 지역 인민 법원: 형사 및 민사 사건 처리
 - . 기본 법원 : 지방 자치 단체, 마을 및 시 정부 수준의 기본 인민 법원
 - . 중급 법원 : 도도부 현, 자치 현, 시정촌 수준의 중급 인민 법원

『 미래사회를 만들어가는 국가지능화 종합연구기관 』

- . 고급 법원 : 지방, 자치구 및 특별 시정촌 수준의 고등 인민 법원. 고등 인민 법원의 의장은 인민 대표 대회에서 임명된다. 판사는 인민대표대회의 상임위원회에 의해 임명됨
- 특별 관할 법원: 이 밖에 중국 군사 법원 (군대), 중국 철도 운송 법원 (철도 운송), 중국 해양 법원 (수자원 운송)이 있음
- 지식재산권에 보다 전문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식재산권법원을 설립 (2014?)

중국 지식재산권 체계

자료 : 박재영 권퍼원법률사무소 한국 변호사

구분	권리	관련법	보호대상
등록필요 (산업재산권) 	발명전리 (특허)	전리법	물질, 물건, 방법에 대한 새로운 기술 방안
	실용신형 (실용신안)	(한국 : 각각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제품의 형상, 구조 및 그 결합에 대하여 제출한 실용적이고 새로운 기술 방안
	외관설계 (디자인)		제품의 형상, 도안 또는 그 결합 및 색채와 형상, 도안의 결합에 대하여 제출한, 미적 감각을 주며 공업에 응용될 수 있는 새로운 디자인
	상표권	상표법	자기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타인의 그것과 식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표장(문자, 기호 등의 표시)
등록 불요	저작권	저작권법	어문, 미술, 촬영작품 등 창작물
	기타 영업비밀 등	반부정당경쟁법	비밀성, 상업적 가치, 비밀보장 조치 등을 갖춘 기술 및 경영정보 등 영업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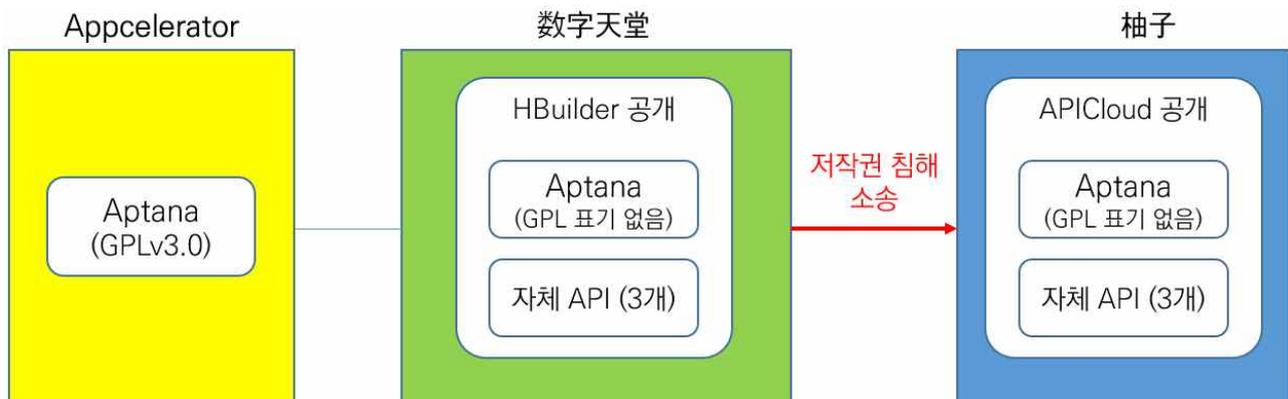
중기이코노미

〈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

3 사건 개요

○ 사실 관계

- 원고: 숫자천당(디지털 파라다이스) 네트워크기술유한공사
- 피고: 유자 네트워크 기술유한공사, 유자 모바일기술회사



○ 소송 경과

- 숫자천당이 유자를 상대로 소송 제기
- 1심(북경 지식재산권법원): 2015년 4월, 숫자천당 승소, 유자 항소
- 2심(베이징 고등인민법원): 2019년 11월, 결과 조사 중

4 1심쟁점 및 판결 결과

○ 원고 주장

- 원고는 HBuilder 프로그램의 저작권자임
- 2014년 9월, 피고가 공식 홈페이지에 업로드한 Apicloud 확인: 세 가지 소스코드를 그대로 사용 중이라는 것을 발견
- 프로그램의 복제권, 개정권, 인터넷 정보 전파권을 침해했다고 판단, 소송 진행
- 사과문 게시 및 배상 요구

○ 피고 주장

- HBuilder 프로그램은 GPL 3.0을 따르는 오픈소스이므로 원고의 허락을 받을 필요없음. 그러므로 저작권 침해 없음
-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들이 침해한 3가지 소스는 Apicloud의 중심 소스가 아님. 소스 사용률이 매우 낮음. 유자도 모두 오픈소스SW로 공개하므로, 악의적 주장 아님
- 원고 소송에 대한 기각 요청

○ 법원 재판 결과

- 소유권에 관한 사실
 - ✓ 2013년 10월 21일, 원고가 HBuilder 개발. 2015년 3월 30일, 5.5.0으로 갱신, 이를 근거로 원고는 HBuilder의 저작권자임
 - ✓ <소프트웨어저작권등록증명서>
- 침해 혐의에 관한 사실
 - ✓ 2015년 4월 1일, 원고가 피고의 홈페이지에서 Apicloud1.1.12판 다운로드받음. 원고는 이 버전 및 2014년 9월 15일부터 2015년 말 버전의 침해 주장
 - ✓ 원고는 피고가 개발한 프로그램 중 HBuilder와의 동일 여부에 대한 감정 신청 → 받아들여짐
 - ✓ (1차 감정 결과) Apicloud1.1.12와 HBuilder.window.5.5.0 비교: 입력기 툴 30개 중 29개 동일, 실행 코드 23개 중 18개 동일, 병행보기 코드 56개 중 44개 동일
 - ✓ (2차 감정 결과) Aptana와 HBuilder 비교: 입력코드 29개 모두 대응 관계없고 동일성도 없음. 통합실행기능 18개 중 13개가 동일 코드임. 병행 보기 44개 코드와 피고가 제출한 소스코드 비교, 총 2개의 동일 코드 발견
 - ✓

『 미래사회를 만들어가는 국가지능화 종합연구기관 』

- 피고가 주장하는 오픈소스SW 관련 사실
 - ✓ 원고 HBuilder의 루트 디렉토리 아래 세 개 기능의 모듈 폴더에는 GPL이 존재하지 않으며 다른 폴더에 존재함
 - ✓ 원고의 세 가지 기능의 플러그인은 독립적인 소프트웨어이고 GPL에 의해 만들어진 파생 프로그램이 아님
- 기타 사실
 - ✓ 피고가 침해한 Apicloud 중의 resetpwdll.dll 문서에 원고의 전자서명 존재. 피고가 원고의 SW를 표절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임
- 법원 의견
 - ✓ 이 사건과 관련된 HBuilder 소프트웨어는 <중화인민공화국저작권법> 제 3조에 규정된 컴퓨터 소프트웨어 저작물에 속함. 본 소프트웨어 중의 세 가지 플러그인, 입력기 틀, 실행, 병행보기 모두 독립적으로 사용 가능하며, 원고는 위 세 가지 플러그인의 저작권을 별도로 등록하였으므로 독립적인 컴퓨터 소프트웨어 저작물에 속함. 따라서 원고는 저작권에 대한 권리가 있으며 저작권법 제 10조에 규정된 방식으로 다른 사람이 소프트웨어 저작물 사용을 금지할 권리가 있음. - 입력기 틀, 실행, 병행보기 포함
 - ✓ Aptana 코드와 숫자천당의 코드는 아주 일부만 동일
 - ✓ 피고가 소프트웨어 침해로 고소를 당한 이유: 복제권과 수정권의 보호범위 위반(피고는 원고의 프로그램 중 가장 큰 문서를 복제하고 그 중 소수를 수정함), 인터넷 정보 전과권의 규범 위반(피고의 홈페이지에서 해당 프로그램을 다운로드받을 수 있도록 제공)
 - ✓ 피고는 원고의 소프트웨어가 GPL에 의해 보호되는 제 3자의 소프트웨어 소스 프로그램을 사용했으며, 오픈소스였다고 주장. 제 3자는 GPL을 기반으로 코드를 사용하고 파생 소프트웨어를 만들 권리가 있음. 법원은 피고가 사용한 HBuilder 중 세 가지 플러그인의 종류와 각 플러그인이 독립적인지에 대한 여부 및 GPL 영향을 받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함.
 - ✓ 피고는 법정에서 세 가지 플러그인이 속한 폴더에 GPL 오픈소스 라이선스가 없다는 것을 인정함. HBuilder 루트 디렉토리에도 GPL 라이선스가 없음. GPL에 따르면 GPL을 적용받는 프로그램은 본 라이선스 아래 보호받는 프로그램이거나 이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개정판 또는 파생 프로그램임. 원고의 세 가지 프로그램이 있는 폴더와 HBuilder 프로그램의 루트 디렉토리에도 GPL 오픈소스 라이선스 문서 없음. HBuilder 프로그램의 다른 폴더에 GPL가 있더라도 세 개의 플러그인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세 가지 플러그인은 개정판과 파생 프로그램에 해당하지 않음, 피고의 행위는 저작권자의 복제권, 개정권, 인터넷 정보 전과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간주 됨. 저작권법 48항, 49항의 규정에 따르면,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권을 통제하지 못함. 이를 어길 시 사과 및 손해배상을 통한 민사적 책임을 져야 함. 피

『 미래사회를 만들어가는 국가지능화 종합연구기관 』

고는 원고의 저작물 수정 권리를 침해하였기에 사과를 하고 민사 책임을 져야 함.
웹사이트와 웨이신 메인 페이지에 사과문을 게시 필요.

- 요약
 - ✓ 기소 이유에 법적 근거가 있기에 법원이 소송을 진행함. <중화인민공화국저작권법> 제3조, 제10조 제1항 3, 5, 12쪽, 제48조, 제49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판결함
 - 1) 피고는 본 판결의 발표일부터 10일 이내 회사 공식 웹사이트와 웨이신 계정에 한 달 동안 사과문을 게시해야 함. 법원은 원고가 신청한 공개 판결문에 대한 비용을 피고가 부담하도록 함.
 - 2) 법원은 피고에 판결 발표일부터 10일 이내 数字天堂의 경제적 손실 125 万과 합리적 지출비 21万을 지급하라고 함.
 - 3) 원고의 다른 소송들은 기각함.
 - ✓ 만약 피고는 본 판결문에 명시된 기간 내 돈을 지급하지 않으면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253조의 규정에 따라 지연 기간의 이자를 두 배로 지급해야 함. 사건 접수 비용 34800元 역시 피고가 지급. 본 소송을 위해 진행한 두 번의 감정 비용 또한 피고가 부담하며 원고가 진행한 한 번의 감정비용 15万 또한 판결 발표일부터 10일 이내 원고에게 지급해야 함. 이 판결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당사자는 판결일로부터 15일 이내 법원에 항소를 제기하고, 상대방의 수에 맞춰 사본을 제출, 항소 접수 수수료를 지급하고 베이징 고등 인민 법원에 항소할 수 있음.

5 2심쟁점 (Linux중국의 분석: GPL에 초점)

○ 경과

- 2018년 7월 20일, 숫자천당의 항소로 컴퓨터 SW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2심의 최종 판결은 베이징 고등인민법원에서 이루어짐

○ GPL 오픈소스 라이선스 계약 이슈임

- 오픈소스 라이선스는 법적 문서임
- 1심 법원은 GPL 라이선스의 법적 효력을 명확히 하지 않았지만, 관련된 3개의 플러그인이 GPL 계약에 의해 제한되는지 여부를 논의할 때 GPL 라이선스가 법적 구속력이 있다고 암묵적으로 가정. 2심 법원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와 GPL 합의의 핵심 쟁점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지 않음
- 2심 법원은 GPL 계약이 법적 구속력, 즉 계약이나 계약의 법적 효력과 유사하다는 점은 인정했지만, 중국의 저작권법에 따라 GPL 계약 조건을 더 이상 해석하지 않음
- 커뮤니티에서 GPL 협정에 대한 해석, 특히 GPL의 전염성에 대한 해석은 미국 저작권법에 근거한 것으로 국내 법원에서 인정할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 법원은 GPL 계

『 미래사회를 만들어가는 국가지능화 종합연구기관 』

약의 법적 구속력을 확인했기 때문에 GPL 계약의 해석은 커뮤니티에서 해석하거나 중국 저작권법에 따라 독립적으로 해석해야 함

○ 첫 번째 인스턴스 인식에 대한 생각

- GPL 계약의 구속력 있는 범위(감염성)와 관련하여 1심 법원은 사건과 관련된 3개의 플러그인이 독립적으로 실행될 수 있고 3개의 개별 폴더에 저장되며 3개의 개별 폴더에 GPL 라이선스가 없다고 판결. 플러그인은 GPL에 따라 오픈 소스로 제공되어야 하는 파생 또는 수정된 버전이 아님.
- GPL 라이선스의 관련 텍스트

- The "Program", below, refers to any such program or work, and a "work based on the Program" means either the Program or any derivative work under copyright law: that is to say, a work containing the Program or a portion of it, either verbatim or with modifications and/or translated into another language. (Hereinafter, translation is included without limitation in the term "modification".)---GPL 3.0
- To "modify" a work means to copy from or adapt all or part of the work in a fashion requiring copyright permission, other than the making of an exact copy. The resulting work is called a "modified version" of the earlier work or a work "based on" the earlier work. A "covered work" means either the unmodified Program or a work based on the Program.---GPL 2.0
- "프로그램"은 그러한 프로그램 또는 저작물을 말하며 "프로그램 기반 저작물"은 프로그램 또는 저작권법에 따른 파생 저작물을 의미합니다. 즉, 프로그램 또는 그 일부를 포함하는 저작물 그대로 또는 수정 및/또는 다른 언어로 번역된 것입니다. (이하 "수정"이라는 용어에는 번역이 제한 없이 포함됩니다.)---GPL 3.0
- 저작물을 "수정"한다는 것은 정확한 사본을 만드는 것 외에 저작권 허가가 필요한 방식으로 저작물의 전체 또는 일부를 복사하거나 각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결과물을 이전 작업의 "수정 버전" 또는 이전 작업을 "기반으로 한" 작업이라고 합니다. "적용된 저작물"은 수정되지 않은 프로그램 또는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하는 저작물을 의미합니다.---GPL 2.0

- GPL 모듈 A와 모듈 B가 독립적인지 여부는 A와 B가 별도의 폴더에 있는지 여부로 판단할 수 없으며 기능적 관계, 통신 관계, 호출 및 종속성 관계로 판단해야 함
- 플러그인이 기본 프로그램과 독립적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함
 - ✓ 1. 플러그인의 미션(메인 프로그램용인지 여부)
 - ✓ 2. 플러그인이 파이프라인, 대기열 및 함수 호출과 같은 기본 프로그램과 상호 작용하는 방식
 - ✓ 3. 교환 메시지의 친밀한 의사 소통;
 - ✓ 4. 예외 진술 등이 있습니까?
- 1심 법원은 배상액을 결정할 때 관련된 3개의 플러그인이 3개의 독립적인 소프트웨어 작업이라고 지적함. 유자는 GPL이 전염성 여부를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3가지 플러그인의 독립성을 옹호하지 않음

○ 두 번째 인스턴스 인식에 대한 생각

『 미래사회를 만들어가는 국가지능화 종합연구기관 』

- 2심에서 유자는 사건 관련된 세 플러그인의 독립성을 부정하는 포렌식식별을 다시 한번 제안. 법원은 2심 소송에서 3심의 감정평가 신청이 사법절차의 정의와 사법절차의 효율성을 침해했다고 판단. 2심 법원은 Liangyouzi가 제출한 새로운 포렌식식별신청서의 내용과 이 사건에서 입증할 사실 사이에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없다고 판시했는데, 이는 GPL에서의 작업 여부가 독립적이고 저작물이 GPL에 구속되는지 여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 경우 침해 판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침. 2심 법원의 기각 이유는 GPL의 전염 가능성에 대한 논의를 직접적으로 피함.
- 2심 법원은 디지털 파라다이스의 기존 증거가 관련된 3개의 플러그인이 HBuilder 개발 도구 소프트웨어의 다른 프로그램과 독립적으로 실행될 수 있음을 증명하기에는 불충분하지만 독립 플러그인 여부에 대해서는 더이상 논의하지 않음. 1심 법원은 저작의 독립성을 근거로 한 GPL 변호를 무효로 했고, 2심 법원은 GPL 변호에 대한 1심 의견을 받아들였으나 저작물의 독립성 전제는 부인함
- 독립 저작물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해당 저작물이 2차적 저작물(파생 저작물)인지 수정본(수정판)인지를 직접적으로 판단하여 GPL의 구속 여부에 직접적인 영향 미침

○ 유자 SW에 대한 고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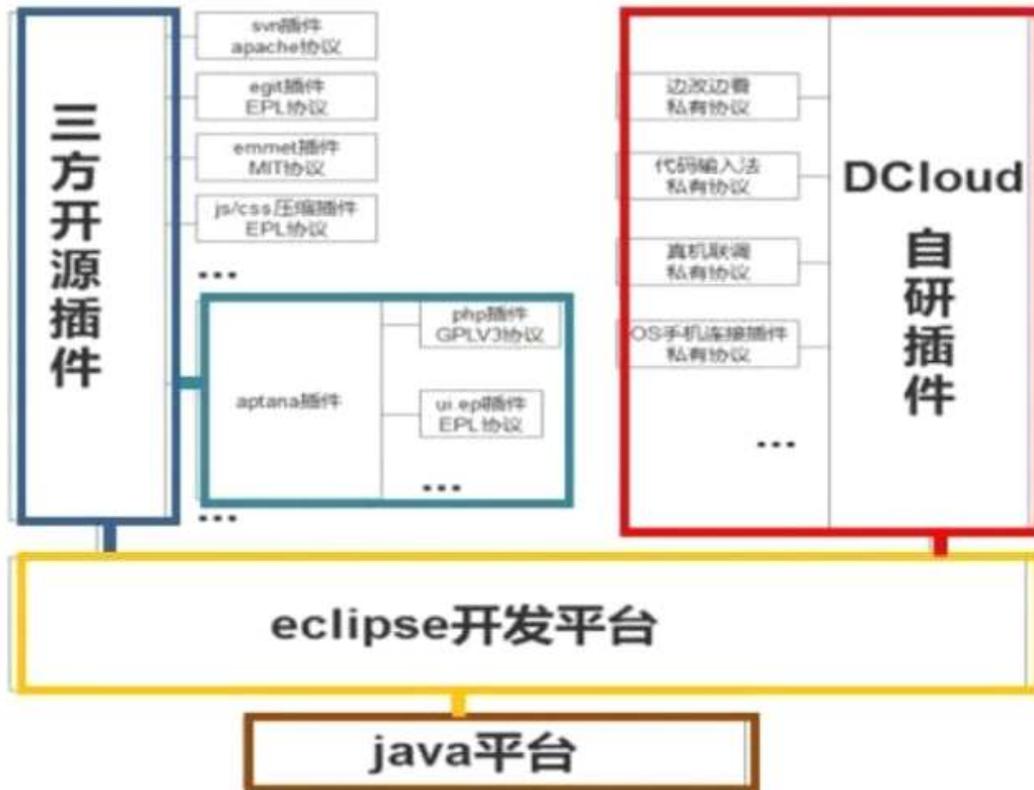
- 법의학 식별(유자)
 - ✓ 1. 관련된 세 가지 플러그인이 Eclipse 메인 SW없이 Windows 환경에서 독립적으로 실행될 수 있는지 여부;
 - ✓ 2. 플러그인에 포함된 세 가지 플러그인의 소스 코드를 컴파일하여 플러그인이 기본 Eclipse 소프트웨어에서 독립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지 확인
 - ✓ 3. Hbuilder 소프트웨어 디렉토리에서 "org.eclipse", "org.apache", "com.apтана" 접두사가 붙은 하나 이상의 파일 또는 디렉토리 JAR 파일을 임의로 삭제하여 관련된 세 가지 플러그인이 정상적으로 실행될 수 있는지 확인
- 플러그인은 Eclipse 메인 프로그램과 독립적이며, 이클립스 메인 프로그램 없이 Windows에서 플러그인이 독립적으로 실행될 필요는 없음. 플러그인의 독립성은 플러그인의 기능이 명확하고 특정 메인 프로그램에서 사용할 수 있지만 특정 메인 프로그램에 의존하지 않음. 마지막으로 메인 프로그램은 플러그인과 분리되어 메인 프로그램 자체의 모든 기능을 잃지 않고 독립적으로 실행할 수 있어야 함.

○ 소송 내용 이해

- GPL 감염성의 결정은 세 가지 측면에서 봐야 함
 - ✓ 1. Eclipse 메인 프로세스 자체;
 - ✓ 2. Eclipse 메인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하는 GPL 플러그인;
 - ✓ 3. 관련 플러그인과 메인 프로그램, 관련 플러그인과 GPL 플러그인 간의 관계.

『 미래사회를 만들어가는 국가지능화 종합연구기관 』

- 숫자천당 로펌이 논평한 1심 결과의 사진 분석



(1) Eclipse 메인 프로그램에서

- APICloud와 HBuilder는 모두 타사 오픈 소스 플러그인 + 자체 개발 플러그인을 포함하여 주요 프로그램 Eclipse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는 통합 개발 환경 IDE임
- 이클립스 메인 프로그램은 GPL과 호환되지 않는 EPL 라이선스로 출시. 2017년 8월에 출시된 EPL-2.0 버전도 서브라이선스 옵션을 추가했음에도 GPL과 호환되지 않음. 따라서 다운스트림 제품인 HBuilder의 Eclipse용 패키징 배포는 Eclipse 라이선스를 변경할 수 없음
- 플러그인의 경우 이클립스의 특정 기능을 확장한 것에 불과하며, 이클립스 메인 프로그램에서는 이클립스 자체 이외의 타사 플러그인은 필요없다고 할 수 있음. 타사에서 개발한 Eclipse 메인 프로그램의 플러그인은 일반적으로 EPL의 파생 작업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EPL의 전염성 조항에 따라 EPL에 구속되지 않음.
- EPL은 약한 카피레프트 라이선스이지만 여전히 GPL과 유사한 "전염성" 라이선스라는 점을 강조해야 함. 따라서 다운스트림 소프트웨어 개발자는 EPL 소프트웨어 및 GPL 소프트웨어를 다룰 때 호환성 문제를 심각하게 고려해야 함.

(2) Aptana 플러그인에서

- Aptana는 2006년 출시 당시 EPL 1.0으로 출시되었으며, 2017년 9월 21일에는 GPL3.0 과 APL(Aptana Public License) 이중 라이선스로 수정됨

『 미래사회를 만들어가는 국가지능화 종합연구기관 』

- APL은 오픈 소스/자유 소프트웨어 라이선스가 아니며 상업용 라이선스로 간주될 수 있지만 비배포 내부 사용에 대해서는 무료
- Aptana는 Eclipse 메인 프로그램의 플러그인으로 사용되며, EPL과 GPL의 비호환성으로 인해 Aptana의 GPL 플러그인은 EPL에서 라이선스를 받은 Eclipse 메인 프로그램과 연결되어야 하며 GPL 라이선스에서 예외 선언문을 작성해야 함
- Aptana의 공식 웹사이트에서 독립 저작물에 대한 GPL 감염 예외 및 집계 프로그램에 대한 GPL 감염 예외

GPL Section 7 Exception

……which are conveyed to you by Appcelerator, Inc. and licensed under one or more of the licenses identified in the Excepted License List below (each an "Excepted License"), as long as: you obey the GPL in all respects for the Program and the modified version, except for Excepted Works which are identifiable sections of the modified version, which are not derived from the Program, and which can reasonably be considered independent and separate works in themselves, all Excepted Works which are identifiable sections of the modified version, which are not derived from the Program, and which can reasonably be considered independent and separate works in themselves, are distributed subject to the Excepted License under which they were originally licensed, and are not themselves modified from the form in which they are conveyed to you by Appcelerator, and the object code or executable form of those sections are accompanied by the complete corresponding machine-readable source code for those sections, on the same medium as the corresponding object code or executable forms of those sections, and are licensed under the applicable Excepted License as the corresponding object code or executable forms of those sections, and any works which are aggregated with the Program, or with a modified version on a volume of a storage or distribution medium in accordance with the GPL, are aggregates (as defined in Section 5 of the GPL) which can reasonably be considered independent and separate works in themselves and which are not modified versions of either the Program, a modified version, or an Excepted Work.

If the above conditions are not met, then the Program may only be copied, modified, distributed or used under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e GPL or another valid licensing option from Appcelerator, Inc. Terms used but not defined in the foregoing paragraph have the meanings given in the GPL.

……Appcelerator, Inc.가 귀하에게 전달하고 아래 예외 라이선스 목록(각각 "예외 라이선스")에 명시된 라이선스 중 하나 이상에 따라 라이선스가 부여된 라이선스:

귀하는 본 프로그램과 수정된 버전에 대한 모든 면에서 GPL을 준수합니다. 단, 수정된 버전의 식별 가능한 섹션이고 프로그램에서 파생되지 않고 그 자체로 독립적이고 별도의 작업으로 합리적으로 간주될 수 있는 예외적 저작물, 모든 수정된 버전의 식별 가능한 섹션이며 프로그램에서 파생되지 않고 그 자체로 독립적이고 별도의 작업으로 합리적으로 간주될 수 있는 예외 저작물은 원래 라이선스가 부여된 예외 라이선스에 따라 배포되며 그 자체가 아닙니다. Appcelerator가 귀하에게 전달한 형식에서 수정되고 해당 섹션의 개체 코드 또는 실행 가능한 형식은 해당 개체 코드 또는 실행 파일과 동일한 매체에 해당 섹션에 대한 완전한 해당 기계 판독 가능한 소스 코드와 함께 제공됩니다. 해당 섹션의 형식이며 해당 예외 라이선스에 따라 해당 개체로 라이선스가 부여됩니다. 해당 섹션의 또는 실행 가능한 형식과 프로그램과 함께 집계되거나 GPL에 따라 저장 또는 배포 매체 불륨의 수정된 버전으로 집계된 모든 저작물은 집계됩니다(GPL의 섹션 5에 정의됨). 그 자체로 독립적

『 미래사회를 만들어가는 국가지능화 종합연구기관 』

이고 별도의 작업으로 합리적으로 간주될 수 있고 프로그램, 수정된 버전 또는 예외 작업의 수정된 버전이 아닌 것.
 위의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 본 프로그램은 GPL의 조건 또는 Appcelerator, Inc.의 다른 유효한 라이선스 옵션에 따라서만 복사, 수정, 배포 또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앞 단락에서 사용되었지만 정의되지 않은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GPL에 주어진 의미.

- Aptana는 "파생 저작물"의 해석을 부분적으로만 자격 부여. 즉, GPL 라이선스로 Aptana를 실행하고 Eclipse와 같은 독립 프로그램과 상호 작용하는 것은 전염되지 않음. Aptana를 수정하거나, 다른 프로그램을 Aptana Studio에 통합하거나, Aptana를 다른 프로그램과 통합하는 경우에도 해당 작업은 여전히 GPL 계약의 적용을 받음. GPL을 제외한 GPL 프로그램은 여전히 GPL 프로그램임
- Aptana의 공식 웹 사이트

Can I add EPL'd plugins to Aptana Studio package and redistribute it? No. You can only redistribute the unmodified binary versions of the EPL'd plugins that are part of Aptana Studio when distributing any of the GPL'd code. Adding any files to Aptana Studio package creates a derivative work, and since all derivative works need to be made GPL'd, you will not be able to add EPL'd (or any other license) plugins without contacting us for a commercial license.

What if I want to make changes to some of Aptana Studio's EPL'd plugins? You are free to make changes to any of Aptana Studio EPL'd code under the terms of the EPL. To get those redistributed as part of Aptana Studio, we encourage you to contribute those back to Aptana so that we may evaluate your changes for inclusion back into the product.

Can I take unmodified Aptana Studio binaries and combine them with an Eclipse distribution? No. Combining our GPL'd licensed code with any other product requires that the entire product be GPL'd, and therefore you cannot include any Eclipse distribution.

Aptana Studio 패키지에 EPL 플러그인을 추가하고 재배포할 수 있나? 아니요. GPL 코드를 배포할 때 Aptana Studio의 일부인 EPL 플러그인의 수정되지 않은 바이너리 버전만 재배포할 수 있다. Aptana Studio 패키지에 파일을 추가하면 파생 작업이 생성되고 모든 파생 작업은 GPL로 만들어야 하므로 상업용 라이선스에 대해 문의하지 않고는 EPL(또는 기타 라이선스) 플러그인을 추가할 수 없다.

Aptana Studio의 EPL 플러그인 중 일부를 변경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EPL 조건에 따라 Aptana Studio EPL 코드를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다. 이를 Aptana Studio의 일부로 재배포하려면 제품에 다시 포함하기 위해 변경 사항을 평가할 수 있도록 Aptana에 다시 제공하는 것이 좋다. 수정되지 않은 Aptana Studio 바이너리를 Eclipse 배포판과 결합가능한가? 아니요. GPL 라이선스 코드를 다른 제품과 결합하려면 전체 제품을 GPL해야 하므로 Eclipse 배포를 포함할 수 없다.

- 숫자천당은 자사의 HBuilder가 Eclipse 플랫폼 프레임워크와 수많은 플러그인을 포함하는 집합체 패키지라고 생각하지만, Eclipse 기반으로 개발되고 Aptana의 GPL 플러그인으로 패키징됨. 독립 프로그램과 집계 프로그램에 대한 GPL 프로토콜의 조항으로

『 미래사회를 만들어가는 국가지능화 종합연구기관 』

볼 때 HBuilder가 감염되지 않았는지 확인하기 어려움. 이 잠재적인 전염이 확립되면 숫자천당의 HBuilder 배포는 규정 준수를 충족하지 않으며 내부 EPL 및 GPL 소프트웨어는 호환되지 않음. 직설적으로 말하면 전체 배포가 GPL의 적용을 받을 수 있음. 동시에 이것은 EPL이 약한 카피레프트 라이선스임에도 불구하고 Eclipse에서는 허용되지 않음. 이러한 문제는 대부분 EPL과 GPL의 카피레프트 특성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인해 발생.

(3) 관련된 Plug-in과 메인 프로그램과 Aptana Plug-in의 관계

- (위 2단계 분석이 GPL에 구속된다는 결론에 이르면 다음 분석이 필요 없음)
- Aptana와 숫자천당에 포함된 3개의 플러그인 간의 관계를 추가로 분석. 관련된 3개의 플러그인이 Aptana와의 호출, 통신 및 종속성을 가지고 있다면 포함된 3개의 플러그인은 필연적으로 GPL에 감염됨. GPL 제약 조건이 적용
- 위의 3단계 분석을 통해 GPL 감염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독립적인 작업인지 여부가 중요함. 그렇기 때문에 1심 법원의 독립성 판단이 GPL 자체의 해석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지만 적어도 일치함. 저작물의 독립성에 대한 2심 법원의 판단은 일관성 없음
- 위의 분석은 Eclipse를 중립적인 메인 프로그램(즉, Eclipse 메인 프로그램의 저작권 소유자가 소송 참여자가 아님)을 기준으로 GPL 플러그인과 Non-GPL 플러그인을 심사. 위의 판단은 완전히 또는 대부분 무효.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와 GPL에 대해서는 아직 주의해야 할 사항이 많음
-

6 판결의 의의

- 컴퓨터 SW 저작권 침해 사건이 오픈소스SW와 GPL 라이선스에 관한 것이어서 주목 받음
- VirtualApp 사례도 중국에서 GPL 관련한 것으로 분석의 가치있음

7 향후 일정 (논의 가능)

- 숫자천당 소송 관련 현황 분석 후 2차 스터디 진행
- VirtualApp은 비교적 최근 판결이므로 중국의 오픈소스 라이선스 및 GPL 라이선스를 바라보는 시각 이해에 도움이 될 수 있음